

定 款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
(DoubleUGames Co., Ltd.)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라 한다. 영문으로는 『DoubleUGames Co., Ltd.』 (약호 DoubleUGames)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게임 퍼블리싱 사업
3. 캐릭터 및 디지털·문화 콘텐츠 사업
4. 마케팅 대행 및 광고홍보업
5. 벤처투자,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업
6. 부동산 판매 및 임대
7. i-Gaming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업
9.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공급업
10.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및 해외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에 둔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ubleugame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6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시장의 개척 및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 자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9 다만 제8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4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3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 (기준일)

-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또는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2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0조 (주주총회 의사록)

- 1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31조 (이사의 수)

- 1 이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2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5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6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7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 1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 1 회사경영 상의 주요사안 등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3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8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6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48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1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5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7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2조 (이익배당)

-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제 8 장 보 칙

제54조 (사규)

회사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규 및 기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일부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